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천정배의원실 (788-2428)

2003. 10. 2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라

- 인권위 설립 이래 2년간 제·개정 법규에 대한 권고, 29건에 불과
- 추진중인 정보보호, 성별 영향평가로는 부족/ 법규, 공공정책·시업을 사전평가해야

■ 인권위,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2.6%에 불과한데 비해 각하율은 무려 77.6% !

- 진정건수 구금시설 46%로 최고, 경찰 27%, 검찰 9% 순
- 진정사건각하율 검찰관련 88%, 군대관련 90%로 평균보다 높아
- 현행법상 인권위가 마음먹기에 따라 조사할 수도 각하할 수도 있었던 진정사건들 중 각하해버린 사건비율 92%
- 현행법상의 직권조사권과 연구조사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진정가능 기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자세를 바란다

- 기관에 대한 114건의 권고 중 수용 70건(61%), 수용거부 21건(19%), 검토중 23건(20%)
- 권고이행 강제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을 압박할 후속조치권마저 포기하는 자세를 버려야
- 인권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정부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권고 이행여부 조사활동 전무
- 위원장의 국회·국무회의 임의출석 의견진술·발언 단 1건도 없어
- 현재와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행사, 단 2건뿐
- 과태료부과 2건, 고발·수사의뢰 9건, 징계권고 19건뿐

■ 선거권자를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침해다

- 차별금지법의 대상을 헌법상의 모든 권리영역으로 확대하여 제정하라
-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선거권은 나이에 의한 차별
- 헌법학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 병역, 조세, 근로의 의무를 부담하고 보호대상 청소년에서 제외된 18~20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 망국적인 지역간 갈등·반목 해소 위해 고위공무원 인사상의 출신지역 차별 문제에 대하여 직권 조사·연구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법,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침해로 규정

■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라

- 인권위 설립 이래 제·개정 법안에 대한 권고, 29건에 불과
-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보호, 성별 영향평가로는 부족
- 행정법규·공공정책·공공사업의 입안·수립·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인권침해 가능성 평가해야

- 법과 공공정책, 공공사업은 직접·간접으로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침.
 - 형법 규정이 개정되면 어제까지 처벌받던 행동이 오늘부터는 처벌받지 않는 행동으로 되기도 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을 입회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나, 어떤 나라에선 변호인 입회 없이 한 조사 내용을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분권화 정책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보다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공무원 채용시의 여성할당 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도와 성차별을 해소하게 함.
 - 또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철도와 지하철역사 건축사업은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지하철 접근·이용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법과 정책, 사업은 그 입안이나 수립, 계획 단계부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감시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 번 시행된 법과 정책, 사업은 관성이 붙거나 그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변화와 결과물을 없애는 것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개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참여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프라이버시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획단계부터 필수적으로 정보보호 요소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등이었음.
 - 그러나, 법제도가 정비되기도 전인 올 상반기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인권의 개선권고를 계기로 참여한 사회현안으로 떠올라 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한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 지난 8월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면서 채무종류, 질병등 휴직사유, 월저축액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까지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음.
 - 올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릴 정보사회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프라이버시, 정보접속권 등을 둘러싸고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중

- 한편, 여성부는 지난 9. 24. 법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사전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시범 적용케 하고 2005년부터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광부의 문화영향평가 논의도 있음)
-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정, 정책과 사업의 입안·시행 과정에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법, 정책,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성 문제와 국민기본권 보장 문제가 대립,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짐.
-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제는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사회적 토대를 이루는 사항들에 대한 평가제도이고,
 -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보, 성별 영향평가제의 틀만론 인권을 기준으로 여러 영역과 분야에 걸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정, 정책수립, 사업계획을 사전에 평가하여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 사회세력간의 대립,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 그나마도 인권보다는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행정부가 이를 관장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언론자유, 노동권, 장애인의 권리 등 모든 인권분야마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를 때마다 독자적으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그 기준과 적용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 예1) 유네스코의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에서 개개인의 게놈에 영향을 주는 연구와 치료 또는 진단은 반드시 그 자체 잠재적인 위험성과 이익에 대한 엄격한 **사전평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전영향평가**를 규정
 - 예2) 1998. 제2차 아셈회의에서 비정부단체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경제 정책이 일반 사람들, **인권, 환경**에 가져오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는 차원에서 전개되도록 하는 과제, 즉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평가**의 도입을 주장
- 따라서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권, 정보접근권, 반감시권), 여성평등권은 물론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다양한 차원과 영역의 기본권 전반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 이를 국가인권위가 통일적으로 관장케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인권위는 행정부 등이 법규를 제·개정할 때 미리 통보해오는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001. 11. 설립 이래 지난 8월말까지 통보받은 법안은 그 대상이 행정법규로 한정되어 총 46건(이 중 내용에 대해 권고한 것 29건)에 불과하고 그 실효성이 낮고, 일반적으로 정책·제도에 대한 권고(같은 기간 동안 10건)도 할 수 있으나 사후적인 것이어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함.**
- 인권영향평가제의 내용은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각계각층의 국민과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보해야 하고,
-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장이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령 또는 정책 등의 제정·입안 내지 시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작성·제출한 인권영향평가서와 법규안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것을 협의·권고하게 되며,

- 관계기관등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중지 또는 변경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야 할 것임.

- 결국 인권영향평가제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자기반성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임.

((질의))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는 현재 행정부나 지자체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통보해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한편 정보인권 대처방안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체에 그 범위와 대상을 넓혀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 인권위,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용률 2.6%에 불과한데 비해 각하율은 무려 77.6% !

- 진정건수 구금시설 46%로 최고, 경찰 27%, 검찰 9% 순
- 진정사건각하율 검찰관련 88%, 군대관련 90%로 평균보다 높아
- 현행법상 인권위가 마음먹기에 따라 조사할 수도 각하할 수도 있었던 진정사건들 중 각하해버린 사건비율 92%
- 현행법상의 직권조사권과 연구조사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진정가능 기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해야

□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건수는 총 4,892건임

- 이들을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교도소, 감호소 등의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건수가 전체 45.9%(4892건)로 가장 많으며, 경찰 27.4%(1339건), 검찰 8.6%(419건), 기타국가기관 7.1%(350건), 군대 3.4%(166건), 보호시설 1.5%(72건)순임

- 그리고 진정사건 중 종결된 것은 2,970건으로 이 가운데 77.6%(2,304건)가 각하되었고, 16.8%(499건)가 기각되었음. 구제가 결정된 사건(인용 : 고발·수사의뢰, 정계권고, 긴급구제, 권고, 합의권고)은 2.6%(78건)에 불과함

□ 특히, 검찰과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사건의 각하율은 각각 87.7%(264건), 90%(63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2001.11 - 2003.8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현황 및 그 결과

	구금시설	경찰	검찰	군대	보호시설	기타국가 기관	계
접수 (이월포함)	2,246	1,339	419	166	72	650	4892
처리건수(처리 건수/접수건수)	1,298 (57.8%)	784 (58.6%)	301 (71.8%)	70 (42.2%)	39 (54.2%)	478 (73.5%)	2970 (60.7%)
처리종인용(인용 건수/처리건수)	34 (2.6%)	33 (4.2%)	2 (0.7%)	2 (2.9%)	2 (5.1%)	10 (2.1%)	78 (2.6%)
각하(각하건수/ 처리건수)	978 (75.3%)	555 (70.8%)	264 (87.7%)	63 (90%)	30 (76.9%)	414 (86.6%)	2304 (77.6%)
기각(기각건수/ 처리건수)	230 (17.7%)	172 (21.9%)	34 (11.3%)	5 (7.1%)	6 (15.4%)	52 (10.9%)	499 (16.8%)

- 검찰이 피진정인인 진정사건의 각하율이 높은 이유는, 인권위에만 진정을 제기한 경우보다는 진정 전에 이미 고소를 제기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경우도 종종 있어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형법 123조 내지 125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한편, 군대와 관련한 진정사건의 경우는, 독재정권시절의 군의문사,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등 과거청산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진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각하율이 높음
 - 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물론 각하사건 가운데는 인권위의 관할과 진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파악 없이 기대만으로 진정된 사건들도 종종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심이 있는데도 진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을 기회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각하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일 것임

○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하여 진정가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와 같은 수준인 3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듯이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가급적이면 조사결정을 하여 진정인의 원을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임

- 인권위 설립이래 지난 7.말까지 진정사건 총 접수건수 5,830건, 그 중 각하건수는 2,998건(80.5%).
- 같은 기간 '1년이상 경과 사유'로 각하할 수 있었던 사건 295건 중 각하한 사건 271건(91.9%), 각하지 않고 조사결정한 사건 24건(8.1%)
- 최근사례: 인권위는 지난 4. 18. 최연희의원이 "지난해 3. 의문사진상규명위가 82년 의문사사건을 조사하면서 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언론에 알려 명예훼손되었다"고 진정한 것에 대해 각하지 않고 조사결정해 특혜논란

□ 또, 인권위원회는 "과거청산문제"처럼 다수가 관련되어 있고 인권침해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조사·연구하여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임

((질의)) 인권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국가인권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자세를 바란다

- 기관에 대한 114건의 권고 중 수용 70건(61%), 수용거부 21건(19%), 검토중 23건(20%)
- 권고이행 강제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을 압박할 후속조치권마저 포기하는 자세를 버려야
- 인권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정부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권고 이행여부 조사활동 전무
- 위원장의 국회·국무회의 임의출석 의견진술·발언 단 1건도 없어
- 현재와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행사, 단 2건뿐
- 과태료부과 2건, 고발·수사의뢰 9건, 징계권고 19건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인권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공식적 선언이었음.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실질적 민주화의 과정에 접어들면서 일상 사회생활 관계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제적 수준에서 보장받길 원하고, 이 때문에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 그러나 인권위가 설립 이후 2년 가까이 활동해오는 동안 수많은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을 조사하여 구제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미흡했고, 활동자세도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됨.
- 이는 기본적으로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각종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봄.
- 수사가 개시·종결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서면조사를 우선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폭주하는 진정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예산·인력이 부족하며, 지방사무소가 없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인권위는 특히, 권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단체에 협의대상으로 삼을 인권정책책임관을 두고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권고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음.
 - 그러나 인권정책책임관제 등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보다 효율적인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권고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인권위법을 협의와 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이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한과 업무방식을 집중적으로 행사·활용하여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압박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그러나, 인권위는 법규의 미비점과 한계를 이유로 스스로 활동영역과 범위를 좁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법에 규정된 기본 업무와 권한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지난 8.까지 발한 권고는 정책·법령분야 42건, 인권침해분야 53건, 차별분야 16건, 기타 3건 등 총 114건이고 그 중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70건(61%), 수용거부한 것은 21건(일부거부한 것 5건, 1년이상 장기 검토중인 것 2건 포함 ; 19%), 검토중인 것은 23건(1년이상 장기 검토중으로 사실상 수용거부로 볼 수 있는 것 2건 제외 ; 20%)인데,
 - 일부수용 5건을 수용으로 보는 경우 : 수용 75건(66%), 수용거부 14건(14%).
 - 인권위는 수용 72, 일부수용 7, 검토중 16, 미수용 10, 기타 3, 입법진행중 5로 분류
- 이 중 수용거부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해
 - 지난 7. 서울지검 피의자사망사건에 관하여 검사등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지검이 혐의 없음 처분하자 적극적으로 나서 항고한 것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사례**라고 할 것임.
 - 그러나 작년 7.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정신과 진료정보를 이용해 운전면허적성검사를 하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중지할 것을 권고한 것
 - 지난 6. 경찰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징계권고한 것
 - 작년 9. 교육부에 대해 체벌이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에 학생참여를 배제시킨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권고수용을 거부한 경우 비록 권고의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방문 조사, 자료제출요구, 조회, 출석요구, 협의

요청, 공청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활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권교육홍보 효과를 내도록 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면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 이를 바탕으로 권고를 수용하게 하고 나아가 제도개선 효과를 이끌어내며,

- 그래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유설명서를 요구하거나 그 사실 자체를 공표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 나아가 필요한 경우 인권법에 규정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발언하는 등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나 이러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등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임.

□ 또한 인권위가 그 업무와 권한행사의 준거로 삼아야 할 '인권'의 개념과 기준을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기초활동을 좀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가 활동의 준거로 삼는 인권은 "헌법과 국내법,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 상의 자유와 권리"이므로

-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인권실태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특히, 인권위는 지난 1월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보편적 인권기준을 담고 있는 유엔인권규약 미가입조항의 이행을 포함시켰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게 인권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가입한 인권규약의 국내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선정했음.

- 그럼에도 인권위는 그 제출자료에 따르면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국제인권기구가 인권규약에 기해 정부에 권고한 사항들 중 정부가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과 일부 가입을 유보한 인권조약 규정에 가입할 경우 발생할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도 전무함.

- 이는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

□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우리 사회 최후의 인권보루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해석하거나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이들이 다루는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은 인권위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

○ 그러나 인권위가 설립한 이래 최근까지 인권위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현재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는 호주제와 구금시설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것 단 두 건 이외에 전무한 실정

- 현재 우리 현재와 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의견 제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인권침해의 척도였던 양심수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 국가인권위원장,

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마인드를 유지하여 인권의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실태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행 인권법이 규정한 권한과 업무방식에 의해서도 관계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기되거나 계속되어 있는 사건들 중 우리 사회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걸러내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그리고,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NEIS, 보호감호제, 선거연령 제한,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지문날인제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용의 있나?

■ 선거권자를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침해다

- 차별금지법의 대상을 헌법상의 모든 권리영역으로 확대하여 제정하라
-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선거권은 나이에 의한 차별
- 헌법학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 병역, 조세, 근로의 의무를 부담하고 보호대상 청소년에서 제외된 18~20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 헌법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개인에 대한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1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국가인권위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음.

-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통합기획단에 차별시정팀을 두고 있고,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키로 했으며 특별히,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 5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를 구성하고 국민제안창구를 두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8가지 차별유형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 중임.

○ 인권위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일반법/특별법 중 어느쪽으로 할지, 차별에 직접/간접/폭력 중 어느것까지 포함시킬지, 차별사유를 인권위법상의 진정대상으로 명시된 성별, 장애, 나이 등 18개 사유로 한정할지, 차별영역을 같은장에 규정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훈련시설의 이용으로 제한할지, 구체수단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이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특별법으로 하여 일거에 차별관련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과 충격이 클 것이므로 일반법으로 하여 현행법들 중 차별요소를 가진 법률들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차별영역에 관해서는 인권위법이 진정대상을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대상을 넘어서 같은법상 인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상의 전체 인권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헌법 23조~37조:**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권, 근로3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가족권·보건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 특히, 현행법 중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아동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방송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불과하여 연령차별에 의한 평등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영역이 매우 좁으므로 나이차별금지 대상영역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 3조 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신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4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조:**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5조 1항:**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방송법 6조 2항:**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2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용역등의 공급·이용, 교육시설이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한편, 인권위가 2001. 11. 설립 이래 2003. 8.까지 접수한 전체 진정사건 6,121건 중 차별행위에 관한 사안은 387건(전체 진정사건수 중 6.3%)이었는데,

그 중 평등권침해 관련 141건(차별행위 사안 중 36.4%), 사회적 신분 관련 63건(16.2%), 장애 관련 40건(10.3%), 출신국 관련 23건(5.9%), 병력 관련 16건(4.1%), 성별 관련 14건(3.6%)이고, **나이 관련은 13건(3.4%)에 불과함.**

○ 그리고 인권위는 **나이 차별에 관하여**

- 작년 5. 대구카톨릭대 신입생모집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시 나이 어린 순으로 합격처리하는 학교규칙에 따라 불합격처리된 수험생의 진정을 받아 학교당국에 시정을 권고하여 합격처리시킨 사례가 있고,
- 46개 국·공립대학교 교원모집규정에 대해 직권조사하여 2002. 11. 일정 나이를 넘긴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한 8개 대학교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므로 나이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여 대학당국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 그 외에도 외부용역을 통해 공무원고용상의 나이차별 예방방안, 장애에 대한 치료 때문에 입학연기나 휴학을 하는 바람에 취업나이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의 나이차별금지 방안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는 등 몇 가지 성과를 얻었으나 아직까지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함.

○ 나이에 따른 차별은 우리 사회의 봉건적인 유제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폭넓게 존재하나 국민들이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 접수되는 나이차별 진정 건수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됨.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나이차별에 따른 평등권침해를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인권위가 앞서서 진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조사와 연구를 통해 나이차별문제를 공론화해가면서 작은 성과들을 하나씩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

○ 우리사회에 가로놓여 있는 나이차별 문제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선거권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해놓은 것이므로, 본 의원은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기대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5조는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60조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20세 미만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형법은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 민법은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은 18세 이상인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병역법은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지워 제1국민역에 편입시키고 있고,
-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근로자를 20세 이상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도로교통법은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보호법은 보호대상 청소년을 연 1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선거법은 1960.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선거권을 20세 이상된 국민에게만 부여했는데, 그 뒤 강산이 4번 이상 바뀌었다고 할 43년이 지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이 변화·발전하였고,

특히 교육 수준과 민주화의 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언론과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여서 국민 일반의 정치의식은 1960.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임.

- 다른 법률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나이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선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대체로 합리적인 차별기준과 권리제한의 필요최소한도를 18세 수준으로 낮추었음.
- 현행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대학교 1학년생의 약 100%, 2학년생의 약 75%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19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개정된다고 해도 대학교 1학년생의 약 75%가 제외되는 반면 고등학교 학생중 선거권을 얻게 되는 비율은 대략 4%에 불과하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
- 비록 민법이 행위능력을 20세로 보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행위무능력 문제는 행위무능력자 보호,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법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참여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선거법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와 행위능력/행위무능력자의 나이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필리핀,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태국, 브라질, 쿠바, 멕시코, 페루 등이고,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음
- 이에 헌법학자(권영성)들도 "각국에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추세이므로 국민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음
- 결국, 현행 선거법은 18세, 19세인 국민의 참정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약함으로써 헌법상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없이 의무없다"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 조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함.

((질의)) 인권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선거법중 나이차별규정에 관한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용의가 있나?

■ 망국적인 지역간 갈등·반목 해소 위해 고위공무원 인사상의 출신지역 차별 문제에 대하여 직권 조사·연구해야

- 지난 5월 모 신문사 출신 국정홍보처 별정직 분석국장(2급) 고모(55)씨는 "처장과 차장이 자신을 지난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권고 사직시키려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이에, 인권위는 지난 9월 26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에 제한이 있고 그 입면에 인사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헌법상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국정홍보처장에게 권고.

- 국정홍보처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지난 정권때 낙하산 인사를 통해 내려온 별정직들이 하도 많아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해, 이번 사안이 이례적인 개별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인사에 관하여 안고 있는 지역편중 해소문제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됨.
- 지난 4월, 중앙인사위원회는 54개 중앙행정기관 4급(상당) 이상 공무원 7,766명을 대상으로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영남 31.3%, 호남 26.5%, 경인 19.4%, 충청 16.8% 순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영·호남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정무직의 경우 호남 출신이 DJ 정부 말기 40.8%에서 27.9%로 대폭 준 반면, 영남 출신은 24.3%에서 34.6%로 크게 늘어 호남 소외론이 제기되었음
- 호남소외론은 지방자치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7월, 성남시 공무원 인사시 6급 공무원 150여명의 전보인사가 시장과 동향인 경남출신 공무원들을 총무나 감사 부서 등 요직에 포진시키는 등의 지역편중 인사가 단행되었다며 반발, 성명을 내기도 하였음
- 이처럼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이 행해진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편중인사를 포함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은 국민들의 참여한 관심사임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망국적인 지역차별문제를 인권문제로 보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특히,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 인권위 출범 이후 올 8월까지 행해진 직권 조사는 단 4건에 불과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 이번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연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 인권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